

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 공시송달 공고

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를 등기송달 하였으나, 폐문부재의 사유로 2차에 걸쳐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.

2024. 1. 18.

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장



- 1. 건 명: 처분사전통지(의견제출통지)
- 2. 근 거: 구직자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, 제15조
- 3.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

성 명	생년월일	서류의 명칭	서류의 주요 내용		송달불능사유	주소
			처분사유	처분내용		
황O소	1988. 2. 9.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 처분사전통지서(의견제출통지)	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위한 상담 불출석 및 연락두절	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인정 철회	폐문부재 등	전북 익산시 선화로 (이하생략)

- 4. 공고기간 : 2024. 1. 18. ~ 2024. 1. 31.(14일간)
- 5. 기타사항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익산지청 익산고용센터 김경아(063-840-6525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